#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478

제안연월일 : 2025. 2.

제 안 자: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발의제출일		심사경과
		강유정의원 등 11인	'24.6.12.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2200403			소위 심사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4.8.2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4.1120.)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6.)
		임오경의원 등 12인	'24.6.26.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2200959			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소위 심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영화 및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4.8.27.)
비디오물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진흥에 관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4.11.20.)
법률 일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비를 르기   개정법률안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6.)
/11/8 접팔인 	2203347	박정하의원 등 13인	'24.8.29.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11.19.)
				소위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심사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6.)
	2201170	정 부	'24.6.28.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소위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심사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6.)
	2205342	정 부	'24.11.7.	상정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0.)
				소위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심사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 21.)는 위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그간 한국영화의 발전을 지속 뒷받침해온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영화발전기금의 재원확보 및 안정적 운용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최근우리 영화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할 우려가 있는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영화발전기금의주요 재원으로서 부과금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안 제25조의 2 신설 등).

또한,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는 경우 상영등급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로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30조 신설 등).

한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0조제6항).

그 외에도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 감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 을 출입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함(안 제95조 등).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26조 등).

### 법률 제 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25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 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영업기간이 3개년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기간 동안) 같은 달의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 같은 달의 영업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의 입장권 판매액을 월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달의 영업일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병발생 직전 연도까지 영업기간 동안의 월평균 입장권 판매액을 기준으로한다.
-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수 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 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 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

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 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강 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⑥ 부과금·가산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 시 상영하는 영화

제5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0조 중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을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변경등록을 하거나 제2항

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을 "변경신고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제1항"을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비디오물시청제 공업자에 관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신고를 수리한"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3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여"로 한다.

제7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 에 따른다.

제95조제10호 중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를 "제62조제1항제 3호를"로 한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벌칙) 제6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본문 중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를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95조의2, 제96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제57조제2항·제3항, 제60조, 제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제3항·제4항 및 제6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10호, 제95조의2 및 제97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 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60조, 제61조제2항·제3항 및 제63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6조제1항, 제57 조제1항 본문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영등급분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 규정은 1997년 10월 11일 이후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를 이 법 시행 이후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95조제10호, 제95조의2 및 제97조 본문

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제24조(기금의 조성)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3. 제25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영
	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
	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
	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
	<u>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u>
	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
	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
	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
	으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
	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u>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
	<u>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u>
	영한 영화상영관
	<u>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u>

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 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 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 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간 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 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 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 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영업기간 이 3개년 미만인 경우에는 영 업기간 동안) 같은 달의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2개 이상의 영화 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 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 같은 달의 영업일이 1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의 입장권 판매액을 월 판매액으

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달의 영업일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직전 연도까지 영업기간 동안의 월평 권 입장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

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 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 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 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 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 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⑥ 부과금·가산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 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 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생 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삭 제> 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 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생략)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업 저 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 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 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 2. (생략) <신 설>

3. (생략) ② ~ ⑩ (생 략) 고) ①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1. · 2. (현행과 같음)
- 2의2.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 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 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영화
- 3. (현행과 같음)
-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 고)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 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 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6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u>제57조</u>
  <u>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u>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 경) ① (생 략)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한다.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거나 제2

<u> &lt;약 세&gt;</u>
③ <u>제1항</u>
<u>_</u>
· 제6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
<u>제57조</u>
<u>에 따른 신고를 받은</u>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
경) ① (현행과 같음)
<u>&lt;</u> 삭 제>
<u> </u>
3
변경신고를 받거나 변

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또 는 신고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 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변경등록의절차·방법 및 신고증·등록증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영업의 승계) ①·② (생 저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u>제1항</u>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 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 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비 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기구 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 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 부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

경등록을 한
<u>.</u>
④ <u>제1항 및 제3항</u>
ll63조(영업의 승계)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u>제58</u>
조에 따라 등록을 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에 관하여 제1항 -
④ <u>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u>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디오물제
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
의 신고를 받거나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자의 신고를 수리한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⑤ (생략)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비디오물제작업자등 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 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에 대하 여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 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 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 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 인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사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 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② (생략)

제70조(폐쇄 및 수거) ① ~ ⑤ 제70조(폐쇄 및 수거) ① ~ ⑤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u>시장·군수·구청장이 제63</u>
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
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신
고를 받거나 비디오물시청제공
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여
<u>.</u>
·.

② (현행과 같음)

(생략)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시 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비디오물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⑧ (생 략)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략)

10.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의규정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지키지 아니한 자

11. · 12. (생략)

<신 설>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 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1	/ 처	ᆀ	77].	갇	Ò	١
(	04	OН	14	45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⑦·⑧ (현행과 같음)	
제95조(벌칙)	
<u>.</u>	
1. ~ 9. (현행과 같음)	
10. 제62조제1항제3호를	

11. • 12. (현행과 같음)

제95조의2(벌칙) 제62조제1항제2 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소극장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양벌규정)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u>제9</u> 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96조 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u>제93조부터 제</u>
95조까지, 제95조	:의2, 제96조